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“장년층”을 “중장년층”으로 변경하고, “50세 이상 65세 미만”을 “40세 이상 65세 미만”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
※ 향후('24년 하반기)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 협의완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4. 11. ~ 2024. 5. 1.) 결과: 의견
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(☎2133-396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시 장년층”을 “서울특별시 중장년층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장년층”이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“중장년층”이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50세”를 “40세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중 “장년층”을 각각 “중장년층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구체적”을 “구체적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부득이 한”을 “부득이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장년층”을 “중장년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시와”를 “서울특별시와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<u>서울시 장년층</u>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중장년층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<u>장년층</u>"이라 함은 「<u>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<u>50세</u>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 "<u>중장년층</u>"이라 함은 「<u>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----- ----- <u>40세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<u>장년층</u>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. <u>장년층</u>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·여가 지원 사업,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. <u>장년층</u> 인력 개발 및 사회참 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중장년층</u> ----- ----- 4. <u>중장년층</u> ----- ----- ----- 5. <u>중장년층</u> -----

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
6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
· 보급

7.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
8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
9.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제6조(재산)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이사회) ①·② (생략)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생략)

제12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① 시장은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

6. 중장년층 -----

7. 중장년층 -----

8. 중장년층 -----

9. ----- 중장년층 -----

제6조(재산) -----
----- 구
체적인 -----.

제10조(이사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 부득이한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출연금 교부)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제14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① ----- 중장년층 -----

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
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
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
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
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
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
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
제출) ①·② (생략)

③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
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
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
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
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
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
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
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
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----- 서울특별시와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
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서울특별시의회 -----
-----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기존 법규 및 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허준오 (02-2133-3963)